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1
----------	------

제출일자 : 2021. 12. 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수수료 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적용범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 전자정부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